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안내

2023.11.01. 시행

I. 연구활동비 회의식비 기준 변경

1. 회의에 공직자 등이 참석하여 식사(다과포함)를 한 경우

<u>가</u>. 공직자 등에 해당 하는자의 <u>식사비(주문내역) 별도 구분표기가 불가능한 경우</u>

- 1) @30,000원 초과 집행 불가
- 2) 회의비 영수증 제출 불필요(다만, 일부 지원기관에서 영수증 제출 요구)
- 나. 공직자 등에 해당 하는자의 식사비(주문내역) 별도 구분표기가 가능한 경우
 - 1)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60,000원 이하로 식사
 - 2)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자는 30,000원 이하로 식사, 또는 30,000원 초과 비용 공직자 등이 부담하여 별도 결제를 나누어 진행
 - 3) 공직자 등에 해당 하는자의 식사비(주문내역)에 별도 구분표기하여 회의비 영수증 제출 필수
- 다. 연구책임자는 청탁금지법 해당자 여부를 확인 체크하여 제출

2. 회의에 공직자 등이 참석하지 않고 식사(다과포함)를 한 경우

가. @60,000이하 집행가능. 영수증 제출 불필요(다만, 일부 지원기관에서 영수증 제출 요구)

3. 공직자 등 예시

공직자 등에 해당 하는자	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자		
학교 소속 교직원(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연구교수,	학생, 비전임 교원(명예, 겸임교수), 산학협력단 소속		
박사후연구원, 강사, 직원), 공무원, <u>공공기관</u> 및 <u>공</u>	연구원 및 직원*, 기업체 임직원		
직유관단체 임직원	(*학교 겸직인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)		

4. 회의록 작성 내용 추가

가. 회의참석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시 체크박스 체크 필수

회의 참석자		영수증 첨부란			
구분	성명	대학 및 학과 (기관명 및 부서)	확인 사항 ⁵	서명	
	최〇〇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🔽			7	
김〇〇 생명과학대학 생명과 🔽					
	0100	이과대학 화학과 교 수	~		
참여	김00	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학부생			
연구자	박이이	생명과학대학 생명과 학부 학부생	П		※첨부란이 부족한 경우 영수증첨부지(양식 11) 사용
	최이어 이러대학 회학과 대 다 학원생				
외부	길00	㈜삼০০০ 기획팀	П		
참석자	000	한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	1~		
					년 월 일 연구책임자: 홍 길 동 (약

* 위의 경우 공직자 등 해당자 4인@30,000원, 미해당자 4인@60,000원 총360,000원이내 집행가능하며, 영수증 제출 및 식사내역 표기 필수

※주의: 야근식비 기준은 @30,000원 동일

5. 연구활동과 청탁금지법

- 가.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고려대학교 내부규정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 '청탁금지법')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예외규정으로 보지 않고, 법률에 제공자에 제도 벌칙 규정¹⁾이 있어 연구수행 중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면서 연구비의 집행이 가능함.(질의응답 내용링크1,2)
- 나. 연구수행 중 <u>직무를 수행하는 **공직자 등의에게 청탁을 위한 회의식비의 집행은 금액에 상관없이 불 가**함.('청탁금지법제5조제1항각호 '연구실적 인정 등 인정업무도 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)</u>
- 다. 다만, <u>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등으로서 3만원 이하³⁾의 음식물</u> 등 제공은 가능(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)

Ⅱ.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시 국내초청 체재비 기준 변경

1. 본교 여비규정 금액을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에 매번 반영하지 않고 준용으로 변경

구분	직급 A전문가	직급 B전문가
국내전문가	본교 여비규정 <별표1>'제3호'	본교 여비규정 <별표1>'제4호'
국외전문가	본교 여비규정 <별표2>'제3호'	본교 여비규정 <별표2>'제4호'

2. 본교 여비규정 금액반영시 지급가능액 안내

[국내전문가 국내 초청 경비 지급기준]

(단위: 원)

구분	철도운임	항공운임	숙박비	일비 (현지 교통비 포함)	식비
A급	KTX(특)	비즈니스 클래스	130,000	40,000	40,000
B급	KTX(특)	이코노미 클래스	115,000	35,000	40,000

[국외전문가 국내 초청 경비 지급기준]

(단위: US\$)

구분	지역	항공운임	숙박비	일비 (교통비 포함)	식비
Λ ¬	서울	비즈니스 클래스	310	80	158
A급 -	서울 외	- 미프Կ프 జ네프 	276	80	134
B급	서울	이코노미 클래스	276	72	145
	서울 외	이 <u>포포</u> 미 글네 <u>드</u> 	241	72	124

- 1) 청탁금지법 제2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3.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<u>공직자등(제11</u> 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) 또는 그 배우자에게 <u>제공하거나 그</u>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

제23조(과태료 부과)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

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3.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<u>공직자등(</u>제11 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) 또는 그 배우자에게 <u>제공하거나 그</u>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

2) 공직자 등에 대한 기준

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자	관련 법조항
1. 「국가공무원법」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 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	
2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	청탁금지법 제2조제1 호 및 제2호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<u>각급 학교의 장과 교</u> <u>직원</u>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<u>학교법인의 임직원</u>	
4.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2호 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	
5. 1,2,3,4의 <u>공직자 등의 배우자</u>	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
6.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<u>공</u> 직자가 아닌 위원	
7.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된 <u>공공</u> 기관의 장	
8. 법령에 따라 <u>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</u>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	청탁금지법 제11조
9.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<u>공</u> 공기관의 장	
10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<u>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</u>	

<u>나온 사람</u>

11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

청탁금지법 제11조

- 12. **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· 평가 등을 하는 개인** 또는 법인 · 단체
- 13.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·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· 단체의 공무를 제공받는 **공공기관의 장**

3) 공직자 등이 참석한 회의시 음식물 등 가액 대한 판단 기준

음식물 가액의 판단	비고
 공직자 등이 함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등의 가액은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으로 산출*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으로 함께 식사를한 후 가액기준 내에서는 제공자가 계산하고 초과부분은 공직자 등이 계산하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 	- 공직자 등이 제공받은 회의식비가 명확하게 구분 될경우: 해당 식비가 3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- 공직자 등이 제공받은 회의식비가 불분명한 경우: 1/N 금액이 30,000원을 초과할수 없음 ※ 질의응답사례 확인